에 관하여 협약 제1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모든 인간의 불가양(不可讓)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나) 동일한 채용기준을 포함한 고용기회의 보장받을 권리

(다)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업안정 및 직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라)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차우와 등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차우를 받을 권리

(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바)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혼인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나)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다) 특히 아동보육 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무와 병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라) 임신중인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3. 본 조에 취급된 문제와 관련한 보호적 입법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개정, 폐기 또는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협약이 채택된 다음 해인 1980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 여성의 10년 중간 세계회의에서 협약의 서명식이 행해지고 58개국이 서명하였다. 협약은 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해 30번째의 나라가 채약국으로 된 1980년 9월3일 발효하였고, 1994년 현재 135개국이 비준하였다.

편집자주- 여성차별철폐조약 부분은 94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발행된 「UN과 ILO의 여성관계조약과 한국여성노동관계법의 비교연구 - 국내법의 입법과제와 정비방향의 제시」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출처 : 인권활동가를 위한 제 1기 인권운동사랑방 공개강좌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NGO론

NGO론

국제인권문제와 NGO

NGO론

NGO란 무엇인가?

NGO란 명칭은 국가 중심인 UN이나 국제무대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85]

NGO에는 수없이 많은 비영리적인 협회나 재단 또는 사회집단과 자원봉사자들이 포함된다. 물론 의사, 법률가 등 전무가 조직, 노동조합, 협동조합, 청년운동단체, 여성단체, 종교단체, 연구기관들도 NGO에 들어간다.

각각의 NGO는 사회의 한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어 그 구조와 구성 및 활동목표가 매우 다양하다. 이들 중에는 교육을 통한 대중화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거나 시위나 편지 등 직접적인 행동을 벌이는 단체도 있다. 또 어떤 단체는 NGO들에게 물적 자원이나 정보, 활동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NGO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비정부단체를 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다. 비정부단체라고 해서 모든 NGO가 정부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동사무소 등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런 단체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정부와 가까운 단체들은 NGO라고 할 수는 없다.

진정한 NGO가 갖는 특징은 정부조직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소속 여부는 간단히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라면 활동이 정부로 인해 통제되거나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벌이는 활동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NGO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다고 NGO가 항상 정부에 적대적인 활동이나 의견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NGO는 UN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정부에게 압력을 가해 다른 국가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게 만드는 협의를 벌이기도 한다.

NGO는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마도 NGO들의 활동이 없었다면 국제인권제도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NGO는 세계 여러 곳에서 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이다.

85 요즘 들어 NGO란 용어의 이러한 배경을 권위주의적이고 차별적인 것이라 하여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라는 대체용어가 등장했다. CSO는 NGO가 정부기관이 아닌 모든 단체를 포함하는 것과는 달리 1.비영리단체 2.비정치적 3.비집중적(다양한 소규모 운동)이라는 3대원칙을 가지고 있다. (유재현, 『지방화와 지구화 그리고 시민운동』, 한울/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본 란에서는 NGO 또는 민간단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NGO의 특징

모든 NGO 활동이 갖는 속성이면서도 잘 거론되지 않는 한 특징은 이들의 활동이 본질적으로 세계적 사회운동이라는 점이다.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점차 인권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때로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도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인권의 본질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다.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자신의 삶과 사회적 지위와 통치방식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모든 것은 새로운 삶을 가져오는 적극적인 계기가 된다. 인권은 그 실천과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가져오는 하나의 세계적인 사회운동이다. 특히 최근 오십여 년의 변화를 보면 인권운동의 영향은 극적이기까지 하다. 하마도 제네바와 뉴욕의 모든 유엔기구에서 결의되는 것 중 인권에 관련된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이다. 수세기 동안 봉건제와 토후세력의 권세로 운영되는 사회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근대국가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근대국가의 성격은 더 많은 착취의 가능성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투쟁은 늘 우리의 몫이다.

인권운동이 주는 새로운 삶이란 개발도상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빈국이던 부국이던 이 새로운 삶은 모두에게 중요하다. 인권운동가들은 자신들의 인권활동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이해해야 하며, 당면한 문제를 뛰어넘어 대국적인 전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NGO의 세 가지 역할

1. 표준 인권기준의 설정

이것은 NGO와 정부가 협력하여 만드는 것으로 다양한 인권조약으로 그 성과가 나타난다. 이는 국제법으로 더욱 구체화된 인권기준과 유엔인권체계 발전에서 볼 수 있다.

2. 인권교육

대부분의 NGO가 국제·국내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층 민중차원에서도 진행되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인권교육은 사람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그 목표가 있다. NGO가 벌이는 대중활동에는 교육뿐만 아니라 시위, 소송, 언론보도, 파업 등이 있다.

3. 직접 행동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 학교교육이나 복지문제와 같은 국가시책, 정치범, 여

성 등 특정인권문제에 관한 캠페인, 무장투쟁도 여기에 해당된다.

NGO 유형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최초의 효과적인 NGO였다. 이들은 고용주들에게 재정적 손실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힘을 기를 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재정을 마련해주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상당수의 노동조합은 특정문제에 대해 정치와 국제기구 영향을 미치며 특정정당과 같은 정치적 강령과 입장을 가지기도 한다. 예컨대 동티모르의 완전한 독립을 지지하건, 태평양에서의 핵실험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2. 국제원조기관(International Aid Agencies)

국제원조기관이란 개발동상국가에서의 개발지원과 비상시 원조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NGO다. 이들은 대개 선진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인권운동가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지원제공 단체이다. 대부분 재정지원이나 기술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가의 NGO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모든 서방국가들에는 광범한 원조기관들이 있다. 그러나 모든 NGO들이 그렇듯 관심분야와 지원동기, 역량에서 편차가 있다. 일부 원조기관은 정부의 해외원조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있으며, 일부는 종교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또 일부는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3. 자립단체(Self Help Organizations)

개발도상국에서의 자립적 사회운동단체의 존재는 그 사회에 진정한 정치·문화·경제적 발전의 기반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별한 재정 없이 열성적인 개인들이 이끄는 이런 단체들이 흔히 있다. 이런 단체들이 다루는 문제는 주택문제와 사회보장문제로부터 정치적 캠페인과 인권보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대부분의 NGO활동을 보건대 한 단체의 목적과 활동대상이 보편적일수록 비효율적이며, 목적과 활동대상이 특정화될수록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립단체들은 대체로 소규모이며, 실무자들에게 거의 보수를 주지 못하고 활동범위도 지역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런 단체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보확산에 크게 유용한 가능을 하며 직접적인 자원활동도 할 수 있다. 또 이런 단체들은 대체로 그 지역의 뛰어난 정보원천이기도 하다.

4. 인권단체(Human Rights Organization)

인권단체는 세계인권선언과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인권의 원칙에 근거하며 활동하는 정치적 활동단체이다.

활동범위는 정치범이나 수형자 지원부터 환경, 보건, 교육에 관한 캠페인까지 범위가 넓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인권단체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다른 권리에 비해 더 분명히 드러난 권리이면서 또 이에 관련된 효율적인 감시와 보고제도가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범주의 권리는 서방국가와 서방언론의 관심을 더 끄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같이 큰 규모를 가진 성공적인 인권단체는 특정문제에 집중하는 단체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단체로 고도로 전문화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앰네스티의 빠르고 눈부신 성장은 전세계 민중이 인권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광범한 지지의 증거이다.

전세계에는 수천 개의 인권NGO가 있다. 사실 인권침해는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인권운동가들은 두가지 종류의 인권단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치적 캠페인을 전개하는 단체로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정치적 변혁운동에 참여하는 인권단체들이 있다. 그들은 투자의 한 방법으로 인권을 사용하면서 주된 목표는 정권교체에 있다.

두 번째는 정치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들인데, 이들은 스스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단체들은 정치적 투쟁과정에서 모든 세력의 인권침해를 비판할 수 있는 중립성을 지닌다. 이들은 인권을 특정한 목적을 무기로 삼지 않고 인권침해를 동등하게 다룬다.

5. 환경단체(Environmental Organizations)

NGO의 범위가 확대되는 영역이 바로 환경단체분야이다. 환경문제가 점차 주목되어짐에 따라 이 분야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되면서 그 영역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들은 막대한 자금과 열의를 가지고 활동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이들중 일부는 *탄압 받는 사람들보다 동물보호에 더 관심을 둔다. *인권문제와 이것이 환경활동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업을 선호한다. *개발도상국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지 않아 지역문제에 대한 고려와 기술이 부족하다.

환경단체들 중 일부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대다수 단체들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환경문제에 개발, 발전의 관점을 도입하는 등 발전된 관점과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다.

6. 교육단체(Educational Organizations)

개발도상국에서 교육단체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이들이 펼치는 교육활동은 대중적

으로 어떠한 문제에 대해 관심사를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실 가장 필요한 인권활동은 제네바나 뉴욕에서 벌어지는 국제회의보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착취의 성격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획득을 위한 행동에 나서게 하기 때문이다.

지역차원 사회교육은 학교 교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극, 음악, 춤 등에서도 이루어진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독재정권이 두려워하는 저명한 예술가들이 존재한다. 그 예로 칠레의 피노체트정권은 공공장소에서 기타연주를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7. 여성단체(Women's Organization)

여성들은 다른 인권단체에 참여하면서도 자신들만의 단체를 가져야 한다. 물론 여성의 이해가 반드시 남성의 이해와 동떨어진 다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여성단체가 여성의 인권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활동함을 알 수 있다.

여성운동은 지구적 현상이며 아마 인권운동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일 것이다. 여성운동은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를 아는데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은 자기 가족과 마을에서 인권을 교육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8. 종교단체

종교는 인권활동가들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분야이다.

종교단체들은 서방국가 혹은 독재자들이 지배하는 개발도상국에 중요한 문화적 지원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바로 그 종교적 가치가 광신도들의 전유물이 되기도 한다.

일부 종교의 교리와 예식 중에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들이 있다. 서방의 종교단체들은 제3세계나 원주민들의 생활을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종교에 기반을 둔 NGO들은 다음과 같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

재정지원이 선교가 목적인 경우, 인권침해자나 독재자와 협력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개혁운동을 하는 종교단체 중에는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종교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갖는 경우도 있다.

9. 국제적 네트워크의 필요

이상과 같이 설명한 NGO 유형은 전세계 NGO와 관련한 수많은 활동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범주로 다양한 유형의 NGO를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아니다. 대부분의 NGO는 다양한 관심과 역량을 가지고 여러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와 자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긴급히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정보망도 필요하다. 이는 전세계 NGO가 연대네트워크를

이룰 때 가능해진다.

대표적인 인권단체

1. Amnesty International(국제사면위원회, AI)

인권단체 가운데 가장 유명한 단체이다. 그 규모도 엄청나서 회원만도 전세계 150개국 1백10만 명 이상이고 런던에 있는 국제사무국에만 2백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국제사면위는 1961년 영국인 변호사인 피터 베넨슨이 '잊혀진 수인들'이라는 기사를 영국의 「업저버」와 프랑스 「르몽드」에 낸 것에서 출발했다. 정치적·종교적 신념으로 수감된 수인의 석방을 위해 중립적이고 평화적인 탄원을 요청한 이 기고문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AI의 주된 활동은 양심수 관련 캠페인이다. 그렇다고 양심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여성, 아동, 인종 등 다양하다. 매년 각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해 발간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의 전세계 회원들의 활동은 단순하면서도 중요하다.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활동은 인권침해가 일어난 국가나, 지역에 항의편지는 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인권단체 AI의 힘의 원천이다.

2. Human Rights Watch

단체 명칭이 말해주듯 주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한다. 1978년에 설립된 단체로 각 지역별로 헬싱키,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Watch 등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체에서 벌이는 활동이 세계 각 국의 인권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AI와 많은 점이 유사하지만 타 단체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감시하고 이에 대해 타 미국의회가 감시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시아 Watch는 지난 87, 88년에 한국과 대만의 인권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활동을 해왔는데 그 이유는 두 나라가 미국과 오랜 유대관계에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과 유대관계가 있고 힘이 미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에 압력을 가해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HR Watch는 관심분야를 정치범이나 양심수에 한정하지 않고, 환경, 노동 등 다양하다.

3.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 of Systems International(HURIDOCS)

1979년부터 활동을 시작, 1982년 정식 창립했다.

인권에 관한 공개적인 정보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제공,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센타다. 이 단체의 활동분야는 한 주제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HURIDOCS는 따로 정보수집활동을 벌이지는 않고 통신과 우편을 통해

각 인권단체들이 보내는 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한다.

4.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IS)

민간단체의 UN 인권관련기구와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1984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매년 인권위원회가 열리는 기간과 인권소위가 열리는 8월에 민간단체 실무자를 중심으로 인턴쉽 프로그램을 실시, 직접 인권위원회에 참여토록 한다.

이밖에도 UN회의에 참가하는 민간단체에게 통신, 사무 등 실무를 지원하다.

월간지「Human Rights Monitor」를 통해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만약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가할 일이 있다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다.

5. SOS Torture

1986년 설립되었고 전세계 2백 개 인권단체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고문관련 네트워크단체다. 만약 어떤 나라에서 고문이 벌어진 것이 접수되면 약 24시간 안에 2만개가 넘는 단체에 긴급조치(Urgent Appeal)를 보내서 사건을 알리고 대사관항의 등의 활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자체 내에 조사단이 있어 직접 침해지역에 가서 고문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또한 고문피해자들이 온전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료, 사회, 법적인 도움을 준다.

이밖에도 SOS Torture는 전쟁 중 아동, 집없는 아동, 차별받는 아동 등 어린이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관련된 활동도 하고 있다.

출처 : 유엔과 인권,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국제 인권문제와 NGO

- UN에 등록한 민간기구, 인권신장에 협의자격 -

이제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UN기관과 전문기관이 인권의 신장과 보장에 어떻게 관련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국제 NGO(민간기구)를 설명하려 한다.

각국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항이 되었다고는 하나, 현재의 국제사회가 잇달아 주권국가를 단위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UN 여러 기관, 전문가 기관 등은 원래 국가의 집합체이다.

이처럼, 국가를 구성국으로 하는 UN에 정부 대표로 출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서는, 구체적으로는 請訓(재외 외교사절이 정부에 훈령을 청하는 것 : 역자주), 훈령 등을 통하여, 즉, 정치·외교의 場인 UN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단기적인, 눈앞의 현정권의 존속을 위해, 활용하려고 하는 일도 가끔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UN헌장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들고 있는 보편적인 목적을 추구하거나, 인권침해 정보를 가져오거나, 국가의 인권정책에 반성을 재촉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각 정부의 정책에 적접으로 따르는 일이 없이, 스스로 새운 정책을 실시해 나가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높이는 행동체'** 즉, Extra National Acters가 필요한 것이다.

UN이 만들어 질 때부터, 이러한 '처음부터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권리, 자유와 생명의 중요함'을 호소하는 국제적 단체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과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정했다. UN헌장 71조에서는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내에 있는 사항에 관계있는 민간단체와 협의하기 위해, 적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UN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NGO는, 同 이사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등록의 기준은, 1986년 채택된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296에 정해져 있다. 등록을 하고 협의자격(Consultative status)가 인정된 단체를 일반적으로 NGO라 부르며, UN은 특별한 권한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UN인권위원회>,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와 <전문가, 실무그룹> 등 UN인권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언권, 문서성명 제출권, 사무국과 협의관계, UN 문서수리 등도 허락된다. UN NGO가 세계시민을 대표하여, 나라와 나라사이의 약속에서 감시의 눈을 빛내고 있다는 뜻이다.

NGO는 성립이유, 역사, 규모, 전문지식, 경험, 인물, 인적관계 등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손대는 분야도 다른데, 인권NGO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 일상적인 인권침해 조사, 나라별 인권실정 조사단의 설립·파견, 국제법정 감시단의 파견, 국제 싱크탱크로서 인권문제를 연구·조사, UN 등 인권기관에 자료제출, 국제인권기관의 위원과 대표단에게 정보를

제출, 압력단체로서 로비, 결의초안 등의 원안비준, UN 등 인권기관에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통보를 제출, 국제 인권여론의 형성, 플랙카드 운동의 국제화, 광고활동, 원조활동,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신적 지원, 인권교육 세미나 등의 설치・운영 등이다.

인권문제의 대다수가 역사적으로 보아, 국가나 기구, 법질서, 행정정책과 관행 등의 잘못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많은 점과, 국제기관이 각국의 인권문제를 검토하는 조건으로 국내구제를 다한 일을(국내문제의 간섭을 형성시키지 않기 위한) 국제법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또한, 국제기관에서는 해당국의 작위, 부작위에 의한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 불이행'을 주로 문제로 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적 NGO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이들 NGO는, Anti-Governmental Organization(반정부단체)가 아니라,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간 국제기구 ; 민간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들은, 외국정부에 대해서, '인권을 침해하기보다, 존중해야 할 것'을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UN사무총장의 설명을 빌리면, "UN의 인권보장체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설득력과 도덕적 권위의 행사에 걸려 있다. 우리들의 목적은, 모든 권력의 자리에 있는 자로 하여금,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것에 의해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풍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고 말한다.

<국가 NGO>란 무엇인가

3개국 이상으로 네트워크, 유럽을 축으로 1만 7천이나

일반인들에게 NGO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이것은 영어의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칭이다.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여기에는 여러가지 일본어역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비정부기관, 비정부기구, 비정부조직, 민간단체, 시민단체 등이다. 여기서는 국제적인 NGO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저자는 많은 경우, '인권과 UN'을 둘러싼 NGO의설명에서 '비정부민간기구'라고 옮기고 있다. '間'이라는 말을 넣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를 생각할 때에 머리에 떠오르는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과 잘 대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다.

NGO는 원래,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등을 담당하는 국가의 기관(Organ of the state)은 아니다. 지방자치체에 속한 기관도 아니다. 원래, 회사, 기업등의 영리단체와 노동조합, 청소년, 여성단체, 협동조합, 정당 따위,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과 종교법인 등도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다. 즉, 국가관계기관의 결정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 모두를 의미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비정부기구조직'으로 번역해도 지장은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행동체로서 국제기구로서의 NGO를 고려할 때, 2개국 이상의 정부간 계약으로, 설치된 UN이라든가, 국제노동기구(ILO)라든가, 유럽 심의회,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등의 정부간 국제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와 견주는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이기도 하면서, 정부간의 계약에 의하지 않는 비정부 국제기구(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인 점을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국제NGO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초로 떠오르는 것은, 적십자연맹,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자유노련, 세계노련,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YMCA, YWCA, UN협회, 국제올림픽위원회,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세계교회협의회, 국제소비자단체연맹 등일지

이들 NGO가 커버하는 분야도 경제, 사회, 문호, 예술, 정치, 과학, 인권, 인도문제, 난민, 무역, 상업, 공업, 교육, 종교, 법률, 환경, 소비자운동, 시민운동, 노동, 복지, 의료, 보건, 통신, 개발, 평화운동, 운송, 금융, 우호친선, 훈련, 가아, 보험, 농업수산, 인구문제 등 모든 분야에 널리 퍼져있고, 거기에 있는 공통점을 파악하는 것도, 좀처럼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목적, 구성, 재정, 기구조직 등도 각 조직에 따라 천양지차이다.

현재 국제협회연맹(Union if International organizations)이라는 별기에에 있는 조직에 의해 세계 각지의 국제NGO를 망라하는 국제기구연감(Year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이 매년 출판되고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세계에는 1만7천에 달하는 NGO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NGO의 조건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①정말 국제적인 목적을 가진 것, ②3개국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완전한 투표권을 얻어 회원이 되고 있을 것, ③정관을 가지며, 집행기관과 임원을 회원이 정기적으로 선출해야 할 것, ④본부 사무소를 갖고,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을 것, ⑤일정기간 동일국민이 임원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부소재지와 임원을 정기적으로 바꿀 것, ⑥활동자금을 3개국이상에서 얻을 것. 회원에 이익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⑦다른 기구와 정식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독자의 활동과 별개의 회원을 가질 것, ⑧현재 활동중일 것.

세계가 국제화·정보화의 물결에 휩쓸림에 따라, NGO의 수는 자꾸 늘고 있다. 아무튼, 그 대다수는 미국,유럽 선진국에 본거지를 두고, 많은 미국,유럽인들을 임원으로 두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NGO의 활동은 매우 서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지사, 서방 자유권적인 사상을 뒷받침하는 분야에서, 서구의 NGO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여간에, 국제적 NGO라고 하기 위해서는, '3개국 이상 네트워크를 가진다'는 점이 '열쇠'라 할 수 있다.

UN NGO로서의 협의자격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단체, 상세히 자격요건 규정

앞의 'UN NGO란 무엇인가'중에서, 민간단체가 <UN NGO>로 인정될 수 있는 일반적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국제 NGO 모두가 국제인권 기관들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국제기관은, "그 기관이 인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채우고 있는 NGO라면, 그 기관에서 활동하기 쉬워진다는" 형식으로, '특별한 협력관계'를 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특별한 관계를 <협력관계>, 그리고,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협의자격이 있는 NGO>라고 부른다.

UN헌장 속에서 NGO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제 71조뿐이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 안에 있는 사항에 관계 있는 민간단체와 협의하기 위해, 적당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계약은, 국제단체 사이에서, 또 적당한 경우에는, 관계가 있는 국제연합 가입국과 협의한 후에, 국내단체 사이에서도 맺을 수 있다."

<UN 인권위원회>, <UN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 각 <실무.전문가 그룹>, <UN 세미나>와 그 밖의 많은 UN인권기관은,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이 있는 NGO'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자격이 있는 NGO를, 일반적으로, <UN NGO>라 부르는 것이다.

UN과 NGO의 협의계약에 대해서는, 1950년 UN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28B에서 원칙이 정해졌는데, 현재는, 1968년 5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296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이 결의는, NGO협의(자문)적 지위를 인정하는 때의 자격요건, 특전, 자문의 내용과 협의관계의 철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선 NGO의 자격요건부터 살펴보자.

NGO에는, 국내NGO와 국제NGO가 있고, 그 구별은 그리 명료하지 않지만, UN경제사회이사회의 NGO위원회에서는, '국제 NGO라는 것은, 3개국 이상 자부를 가질 필요가 있고, 정부간 협정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닌 민간단체이며, 국제연합과 협의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조직을 가리킨다'고 한다. <UN NGO>로서 협의자격을 받는 요건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들이다.

(1) 그 단체는, 국제적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과학, 기술, 인권 그리고 그 밖의 것에 관한 경제사회이사회 소관문제에 관계하고 있어야 한다(결의 1296, 1조).

(2) 그 단체의 목적은, 국제연합의 정신, 목적, 원칙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2조).

(3) 그 단체는, 자기의 목적, 임무, 활동의 성격, 범위에 따라 국제연합 사업을 지원하며, 그 원칙, 활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데 힘써야 한다(3조).

(4) 그 단체는, 그 분야에서 대표적 성격을 가지며, 또 국제적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제4조).

(5) 그 단체는, 견고한 사무국과 집행임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집행부는 단체의 의사결정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5조).

(6) 민주적으로 채택된 의사결정 규정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것은 UN사무총장에 의탁하는 것이 요구된다(6조).

(7) 그 국제적 단체의 기본재산은, 주로 국내자부, 또는 개인의 기부금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자발적인 기부가 이루어질 때는, 경제사회이사회의 NGO위원회에 통지할 필요가 있다. 국내자부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가 아닌 재원으로부터 자금을 얻었을 때에는, <NGO위원회>가 만족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부에서 원조가 있었을 때에는, UN사무총장을 통하여 NGO위원회에 공개보고 되고, 단체의 재산기록에 기재되며, UN의 목적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8조). 이 조건은, NGO의 독자성 ·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8) 국내단체는, 이 견해를, 통상, 자기가 속한 국제단체를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수준에서 같은 주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제단체의 자부인 경우는, 그 국내단체를 <UN NGO>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세계각지의 주된 관심을 반영하는 단체를 평균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대표하기 위해, 또는 그 단체가 어떤 문제에 대해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가입국과 협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9조). 예를 들면, 영국에 있는 Anti-Slavery Society of Human Rights는, 근본적으로는 영국의 국내단체지만, 노예제도라는 분야에서 일한 경험을 고려에 넣어, <UN NGO>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를 둔 <적십자 국제위원회>도 스위스 단체면서 <UN NGO>의 자격을 갖고 있다.

(9) 이미 협의계약을 맺은 국제단체의 위원회나 그룹의 일원인 국제단체는, 보통의 경우, 협의 계약은 만들 수 없다(10조).

(10) 민간단체와 협의계약을 만드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기구의 활동분야가 전문기관의 전체나, 그 대부분일 때,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관계에 있을 때는, 이사회와의 협의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고려한다(11조).

UN과 협의계약

단체의 활동범위, 공헌도로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협의자격에서 결정된 협의내용의 주요한 사항은, 한편으로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이사회산하의 인권 여러 기관이 NGO에 의해 정보와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다른 한편으로는, NGO에 대표그룹의 견해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계약은, 협의자격의 종류에 따라 3개의 카테고리 나누고 있다.

그 차이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296에서 정하고 있다. 그것에 따르면, '협의관계의 선정에는, 해당 단체의 성격과 활동범위, 이사회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원조를 고려해야 한다(15조)고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분을 설정한다'고 한다(16조).

(1) 이사회 활동의 대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사회가 만족하도록 UN의 협의분야에서, 그 목적달성을 위해 공헌을 하는 사실을 증명하며, 실행할 수 있고, 또한, 대표하는 부분의 사람들과 경제적, 사회적 생활을 밀접히 가지며, 아울러 그 멤버쉽이 제법 많은 수에 미치고, 많은 나라

들 국민의 주요한 부분을 폭넓게 대표하고 있는 조직(일반적협의자문단체, 카테고리).

(2) 이사회의 활동 가운데, 다만 몇 개의 분야에서, 특별의 능력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관계하고 있을 것이며, 협의자격을 가지거나, 원하는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조직(특별협의자격단체, 카테고리 2).

인권분야의 NGO는, 이 카테고리 2에 속한 것들이 많다. 결의 1296은, 특별히 인권 NGO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인권분야에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협의자격을 받은 단체는, 특별 그룹 사람들의 관심과 한 국민·나라의 정세, 몇 나라에 걸친 한 그룹의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문제 일반에 관한 국제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분야의 단체 협의자격 신청에는, 단체의 목적이 식민지주의,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적 편견과 그 밖의 인권, 기본적 자유에 대한 중대침해를 지적하는 일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주된 목적이, UN의 목적, 목표를 조장· 장려하는 동시에, UN의 사업에 관한 이해를 추진하는 데 있는 단체들은, 카테고리 2의 협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3)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협의자격을 갖지는 않지만, 이사회에 의해서, 또는 UN사무총장이 이사회나 <NGO위원회>와 상의하여, 이들 단체의 권한 안에서, '이사회와 그 하부조직과 그 밖의 UN기관의 임무에 대해서 때때로 더 효과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된 단체'는, 로-스터라 하는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다. 이 리스트에는 전문기관이나 UN기관과 협의자격을 가진 단체 또는, 비슷한 관계에 있는 단체를 올릴 수 있다.

1987년도 리스트에는 카테고리 1에 속한 것이 35개, 카테고리 2에 속한 것이 299개, 로스터 급은 490개 단체로 이뤄져 있고, 합계 824개 단체이다.

그러면, 협의자격을 얻은 단체는, UN회의에서 어떤 권리를 가질까.

먼저, 옵져버로서 회의에 출석이 허용된다(12조). 물론 회의에 앞서서 예정되어 있는, 회의의 가의제에 대해서도 통지 받으며(20조, 26조), 이 가의제 결정에 즈음해서도, 그 단체의 관심사항을 삽입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21조, 28조).

회의에 출석한 옵져버는, 그 단체의 권한안에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문서에 의한 성명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문서의 길이는, 카테고리 1에서는 2천단어, 카테고리 2와 로스터급에서는 5천단어이다.

또, UN사무총장(현실에서는 UN사무국)은, 협의자격을 가진 NGO에게 다음과 같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46조). ①사무총장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사회 관계문서가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배포되는 것. ②UN이 하는 보도문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③단체가 갖고 있는 특별관심사항을 비공식 토의에서 소개하는 것. ④UN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⑤<경제사회이사회>의 임무에 대한 협의단체의 회의나 작은 모임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 ⑥경제, 사회문제를 다루는 경우, UN총회에서 적당한 좌석배치와 문서배포 준비하는 것.

NGO의 협의자격에는, 3단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헌도와 지명도에 의해서, 더 상위에 오를수록, 명예스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각 NGO는 심사 시기가 오면, 상위급으로 안착을 피하는 일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실의 인권회의 운영을 엿보는 것만으로는, 카테고리 1,2, 로스터 급의 차이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참고로, 각 카테고리에 속한 단체, 가구 가운데, 인권관계로 뛰어난 활약을 하는 것을 몇개 들어 보겠다.

<카테고리 1>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지원단체평의회(ICVA), 국제의원연맹(IPU), 적십자연맹(LRCS), UN협회세계연맹(WFUNA) 등

<카테고리 2>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 Anti-Slavery Society(ASS), 카리타스, 장애자 인터내셔널(DPI), 포어 디렉션 카운슬(FDC), 퀘이커, 인권옹호자단(HRA), 국제페창연맹(IAF),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 국제법률가위원회(ICJ), 적십자 국제위원회(ICRC), 국제인권연맹(IFHR), 국제대학여성연맹(IFUW), 국제인권연맹(ILHR), 팍스 로마나(PR), 래더 바이낸 인터내셔널(RBI), 구세군(SA) 등

<로스터 급>

국제인권인터내셔널계획(IHRIP), Minority Rights group(MRG) 등

UN NGO 로비활동

조사정보제공과 조언, 여러 인권기관의 심의에 공헌

UN NGO로서 협의자격을 얻은 단체가, UN회의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는 지는 앞서 살펴본 일이 있다.

NGO는, 경제사회이사회의 <NGO위원회>를 필두로, 공식, 비공식으로 여러가지 협력·협의·연락모임을 뉴욕과 제네바에서 개최하여, 통일행동을 취하곤 한다. 그들의 로비도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위원회>와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특히 후자)의 결의 초안 등은 그 출처를 더듬어 보면, 기초문 또는 기초문의 원안을 제출한 사람이 NGO관계자일 때가 많다.

NGO의 관계자가, 결의안 초안이나, 보고·의견서를 들고 회의장, 통로, 집회장, 식당, 커피숍 등지에서, 각국대표와 전문가 위원 사이를 뛰어 다니는 모습은, UN 인권관계자 회의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인권관계 조약, 선언 작성 등의 분야에서도 그들의 연구와 제안에 의한 바가 크다. 그들이 활약한 역사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에 도달하기 위한 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문금지 의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제>, <피구금자

보호 의제>, <개발권(발전의 권리)문제>, <선주민의 권리 문제>, <인권활동가의 인권보장>,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 문제> 등에서 적극적인 참가를 하고 있다.

<UN 인권위원회>와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인권소위원회)에 모여 있는 많은 정보자료도 NGO에서 보내진 것이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세계 각지에 회원 70만명을 거느리면서, '정보입수망만'으로도 상당히 넓은 폭을 갖고 있다. 또, 스스로 인권침해상황조사단 등을 설립·파견하여, 작성한 자료와 보고서를 UN 여러 기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기관에 출석하는 대표, 개인전문가 등에게 송부하고 있다.

UN 인권기관중에서도, 비교적 NGO활동의 장이 적다고 볼 수 있는,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 의해 구성된 <인권전문위원회(the Human Right Committee)>에서도, 정부 보고 심사의 심의가 이루어질 때 이뤄지는 위원들의 질문 대다수는, NGO의 정보제공이라는 '입력된 지혜'?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고 보고되어 있다.

어지간한 정도의 법률, 인권문제 Expert라고 하지만, 각국의 인권상황을 상세히 정통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들로서도 NGO가 제공하는 정보는 고맙고, 어느 정도 그것에 의존하는 일도 많다고 한다. 즉, 전문가위원이 회의에서, 어떤 부분까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뒤에서 귀엣말 해주는 NGO의 정보에 따라 좌우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다. 어떤 나라의 <인권상황 보고서>를 심의하기로 결정되면, 그 나라의 법질서, 사회질서의 문제점, 경제상태, 인권상황 등의 정보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모의질문표'까지 NGO로부터 Expert의 손에 건네진 것이다.

1988년 여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실시에 대해 일본정부가 제출한 보고(24번째)의 심사를 둘러싸고, 南都(京都를 北都라 하는 것에 대해)일본, 영국, 스위스의 13개 단체로부터 '반박 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

인권위원회의 대표,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의 위원은, 스스로 조사하려고 해도 시간적인 여유와 수단을 갖추지 못할 때가 많다. 또 위원회 자체에서도,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각국사이의 조정이 안된다든지, 그 인권실정을 조사하는 Fact Finding Mission등도 입국거부 같은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일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NGO의 조사와 연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1975년에, 칠레의 인권상황에 대한 방대한 조사자료가 인권위원회에 제출되었다. 1983년 이래로 인권위원회에서는, '자의적 또는 약식재판에 의한 처형문제'에 대한 자료가 심의에 붙여졌다. 이것들은 그저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남아프리카의 인권상황, 중동지역의 상황, 사회주의에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바하이의 인권,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파키스탄, 스리랑카, 동티모르, 선주민 문제 등을 둘러싼 정보도, 그 많은 것들이 NGO의 공헌으로 유지하고 있다.

NGO에 의한 인권실정 조사
각국의 인권정책에 영향력, 국제여론 형성을 목표로

인권 NGO의 현지 실정조사
— 특수한 인권조사와 법정방청, 80년대부터 파견 증가

인권실정 조사에서 설득행동으로
— NGO에 의한 조사결과 이용, 중요한 자금과 조직력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 편지보내기와 서명운동을 중심으로, <양심수>를 지원

엠네스티의 노력과 고뇌
— 활동대상을 기본권리에 한정, 제 3세계로부터 비판도

법의 지배와 국제법률가 위원회
— 행동파 사무국장을 필두로, 인권활동의 프로 집단

적십자 국제위원회의 실적
— 협력 네트워크 만들기에 공헌, 인도법의 개척자

네덜란드 인권연구소의 작업
— 정평있는 정보수집, 인권조직의 네트로 제공

노르웨이 인권연구소
— 인권외교의 자문기관, 정책입안으로 자료작성

덴마아크 인권센터
— 연구원 제도 추진, 유력 NGO로 파견

각국 설치의 인권연구소
— 국제 인권교육에 공헌, 법 지배의 국제적 감시로

UN과 트레이닝 코오스
— 인권교육관계 간부의 훈련, 신장, 보장강화의 성과

NGO에 의한 인권신장의 시도
— 여러 정부의 설득에 벽, <반정부적 입장> 등 여러요인

인권의 신장 • 보장활동에서, NGO가 담당하는 역할은 중요하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정부간 약속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었고, 둘러싼 상황은 곤란했지만, 각 입장으로부터 인권보장 기구를 설립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가장 오랜 것은, 국제법률가위원회가, 방콕에서 개최한 '동남아시아태평양법률가회의'에서 아시아 지역의 인권조약 작성을 생각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1979년, 8월에서 9월에 걸쳐, 콜롬보에서 개최한 'Law Asia 제 6회총회'에서는 <Law Asia상설 인권위원회>의 설치가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이 상설위원회의 임무 가운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신장, 홍보,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으며, 지역의 여러정부에 대하여, 국제인권규약 비준을 요청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인권위원회>와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설치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하는 것도 포함하였다.

1982년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타이 등 아세안 여러나라의 법률가가 모인 <아시아지역 인권심의회>(Regional council on Human Rights)라는 단체가 결성되었고, 1983년 12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 1회총회에서 <아시아인들과 각 정부의 기본적 책무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아시아 기독교협의회는, 1983년 10월 홍콩에서, '정의와 인권을 위한 아시아 법률가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아시아 12개국에서 인권옹호활동가 36명이 이곳에 출석했으며, <아시아 인권위원회>의 설치가 제창되었다. 이를 수용하여, 1984년12월 7 · 8일에 동경에서, <아시아 인권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이어 같은 해 9 · 10일의 설립회의에서 <아시아 인권위원회>(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인권법의 홍보와 효과있는 실시확보, 아시아 지역의 인권상황 감시, 예측되는 인권침해와 심한 정도의 침해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밖에도,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제기의 수리와 조사도, 목적의 하나로 들고 있다.

1987년 5월에는, 아시아 인권위원회 일본위원회도 발족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NGO의 노력도 효과적이며, 구체적인 움직임이 되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이들 NGO가 반정부적 입장을 강하게 보이는 경향이어서, 여러 정부의 찬동을 얻는 일이 어렵다.

(2) 이들 NGO가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항구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여러 정부가 흥미를 갖는 대상인 <발전의 권리>, <과학기술의 이전>, <개발원조>라든가 하는 인권의 구조적 접근을 하지 않고, <인권침해의 대처>에 관해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여러 정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4) 각국 안에서 정부를 설득하는 활동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안에서 찬성자가 적다.

(5) 몇 개의 NGO를 포함하여, 아시아 태평양 권의 아시아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직접 아시아 인권활동의 주도자로 움직이는 것은, 그다지 외교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 아시아 인권기구 설정에 관하여, 이전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었던 스리랑카의 인권상황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베트남 정세, 한반도,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중소관계, 필리핀, 대만과 대륙의 관계 등을 보면 많든 적든간에, 아시아의 인권을 둘러싼 상황도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보인다. 그래도, 중국의 민주화 실패는, 너무나도 유감이라 할 것이다.

어쨌든, 아시아태평양권에서는, 아직 '새로운 인권의 의미'가 각층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있고, 많은 나라에서 NGO가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각국 정부에 대해, 인권을 위한 설득을 반복하며, 확장해가는 일도 쉽지 않다.

각국정부는, 인권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이 전제와 압박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반역에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의 따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서의 의미를 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 국제인권법 입문, 久保田洋

부 록

세계인권선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조약

UN 인권관련 기구표

주요 인권조약 현황

인권 조약별 위원회 개관

세계인권선언

전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인권의 무시와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유린하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세계의 도래는 모든 인류의 최고의 열망으로 공언되어 왔으며, 인간이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국가간의 우호적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여러 인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인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평등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더욱 광범한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더욱 훌륭한 생활수준을 촉진하고자 결의하였으며, 국제연합의 가입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 및 준수의 촉진을 달성하고자 서약하였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된 이해는 그러한 서약의 완전한 실현에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사회의 모든 개인과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가입국 자신의 인민들과 자국의 통치하에 있는 인민으로 하여금 이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촉진하도록 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노력하고, 그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확보하도록 국내적 및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노력하도록,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이룩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이 세계인권선언을 공포한다.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이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나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자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어떤 주권제한하에 있든지,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거하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4조

누구도 노예제도나 강제노역하에 놓여져서는 안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금지된다.

제 5조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앞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한 어떤 차별이나, 그러한 차별의 유인에 대항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9조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및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 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의 결정 시에 독립의 공평한 법원에 의해 공정한 공개의 심리를 받는 것에 관해 완전하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1. 범죄의 소추를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을 부여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가 행해진 때의 형벌보다 중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12조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경계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이나 다른 나라를 떠나고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 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면하기 위하여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피난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을 원인으로 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원용될 수 없다.

제 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나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 16조

1. 성년의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약혼, 결혼기관중 또는 그 해소 시에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 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와 신념을 바꿀 자유,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포교, 행사, 예배 및 의식을 통하여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 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수단에 의해 국경을 넘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 20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하게 공무를 담당할 권리를 가진다.
3. 인민의 의사는 통치권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정기의 진정한 선거에 의해 표명되어야 한다. 이 선거는 평등의 보통선거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비밀투표 또는 그것과 동등한 자유가 보장되는 투표절차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제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협력에 의해 또한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를 발전시킴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 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하고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하며 실업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보장하는 공정하고 유리한 임금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것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 및 여가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 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복지

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친과 아동을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아동은 적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제 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과 기초적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권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상호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적 관계를 증진하고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부모는 자녀 부여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제 27조

1.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사회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입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자격을 가진다.

제 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인격의 자유롭고 완전한 발전이 그 사회 속에서만 가능한 사회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정당한 승임 및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복지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에 의해 정해진 제한에만 복종한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 30조

이 선언의 어떤 규정도 어떤 나라,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와 자유

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고 또는 그러한 목적의 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A규약)

전문

이 협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될 것으로 간주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인은 공포와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상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시민적 · 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달성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을 수락한 제국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도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 1부

제1조(인민자결권)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그 천연 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이해 자유로이 처분할 수가 있다. 이 때, 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적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의 생존 수단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3. 가맹국(비자치령 및 신탁통치령의 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한 자결권을 존중한다.

제 2부

제 2조(가맹국의 협약준수의무)

1. 각 가맹국은 자기 나라 가용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단독으로, 또는 국제적인 원조와 협력, 특히 경제적 및 기술적인 원조와 협력을 통해,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2.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선포된 권리가 인종 · 피부색 · 성별 · 언어 · 종교 ·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 재산 · 가문 · 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행사될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 및 자국경제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비자국인에게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

제 3조(남녀평등)

가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누릴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4조(공공복지에 의한 제한)

가맹국은 이 협약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국가가 그 권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 제한은 이 권리의 성질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또한 민주사회에 있어서 일반적 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5조(해석 적용상의 주의)

1.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 · 집단 · 개인에게 다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 권리란, 이 협약에 인정된 권리 또는 자유를 파괴하거나, 이 협약에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을 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 또는 행위를 벌일 권리를 말한다.

2. 어떤 나라에서 특정한 기본적 인권이 법률 · 조약 · 규칙 또는 관습으로 인정되거나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또한 인정하는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못한다.

제 3부

제6조(노동의 권리)

1. 가맹국은 노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에는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기회를 얻을 권리도 포함된다. 가맹국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가맹국이 노동의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는, 개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아래서, 착실한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발전과 완전하고도 생산적인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미 직업의 지도 · 훈련 계획 · 정책 · 방법이 포함된다.

제 7조(공정· 유리 노동조건 향유권)

가맹국은 누구나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특히 다음 항목을 보장하는 노동조건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a)최소한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보수

(i)공정한 임금 및 어떤 차별도 없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 특히 여자의 경우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과 함께 남자의 노동조건에 뒤떨어지지 않는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

(ii)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평균적인 생활.

(b)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조건

(c)선임순과 능력 이외의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고, 누구나 고용관계 안에서 저당한 상급 지위로 승진하는 균등한 기회

제 8조(노동기본권)

1. 가맹국은 다음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a)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또 해당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법률로 정해진 바로,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을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하지 못한다.

(b)노동조합이 국내연맹 또는 총연맹을 결성할 권리 및 연맹이나 총연맹이 국제적인 노동조합 조직을 결성하거나 거기에 가입할 권리

(c)법률로 정한 바로,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을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권리

(d)파업권. 그러나 이 권리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2. 이 조문은 군, 경찰, 또는 국가행정기관 구성원의 전기 권리의 행사에 대한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3.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1948) 가맹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을 이 조문의 어떤 규정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 9조(사회보장)

가맹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한다.

제 10조(가정· 어머니· 어린이 보호)

가맹국은 다음을 인정한다.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다. 가능한 한 최대의 보호와 원조가 가정에 대해 주어져야 한다. 특히 가정의 형성을 위해 그렇거니와, 한 가정이 부양할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와 원조가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 결혼은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산전 산후의 상당한 기간동안 산모에게 특별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산모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유급휴가나, 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따르는 휴가가 주어져야 한다.

3. 출생이나 그 밖의 조건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돕기 위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어린이와 연소자의 정신 또는 건강에 해롭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그 정상적인 발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노동에 종사시키는 행위는 법률로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연령제한을 정해야 한다. 임금을 주어서 그 연령에 미치지 못한 어린이를 일 시키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고, 또 처벌되어야 한다.

제 11조(사회권의 기본규정· 일반규정· 기아로부터의 자유)

1. 가맹국은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상당한 생활수준이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쓸 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가맹국은 이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하나 조치를 취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합의에 근거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가맹국은 사람이 누구나 굶주림에서 벗어날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단독으로는 물론 국제협력을 통해, 다음을 이룩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식량의 생산· 보존· 분배의 방법을 개선한다. 개선의 방법으로는 기술적 및 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 영양원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것, 천연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 또는 개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b)식량의 수입 국과 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수요와 관련하여 세계의 식량 공급품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12조(건강권)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가맹국은 조치를 취할 것인 바, 그 속에는 다음을 이룩하

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 바, 그 속에는 다음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저하를 위한, 그리고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을 위한 대책.

(b)환경위생 및 산업위생의 모든 측면의 개선.

(c)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억제.

(d)병에 걸렸을 경우 누구나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창출.

제 13조(교육받을 권리)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교육은 인격의 완성과 인격존엄의식의 온전한 개발을 지향해야 하고, 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심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바, 가맹국은 이점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서 교육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런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모든 나라와 인종· 종족· 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 및 우의를 촉진시킨다는 것,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연합의 활동을 권장한다는 것을 가맹국은 인정한다.

2. 가맹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목적으로 다음을 인정한다.

(a)초등교육은 의무적인 동시에,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b)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한 기간중 중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널리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질 것.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이 이루어질 것.

(c)고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 능력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그 기회가 주어질 것.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이 이루어질 것.

(d)초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그 전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광범하게 기초교육이 장려 또는 강화될 것.

(e)각급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절한 장학제도가 설치되며, 교원의 물질적 조건이 부단히 개선될 것.

3. 가맹국은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녀를 위해 학교를 선택해 줄 자유를 존중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란 공공기관이 설치하지 아니하되, 국가가 설정하거나 승인한 교육상의 최저기준에 합치하는 학교를 가리킨다. 또한 가맹국의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자녀의 종교교육과 도덕교육을 책임지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및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자유를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언제나 1항에 제시된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또 그 기관에서 배풀어지는 교육이 국가가 설정한 최저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조건 아래서만 그러하다.

제 14조(무상초등 의무교육의 실시의무)

이 협약 가맹 당시에 본토에서는 물론이요, 그 통치하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무상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각 가맹국은 다음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즉 무상 의무교육원칙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상세한 행동계획을 2년 이내에 적성· 채택하되, 합리적인 실시기간이 그 계획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 15조(문화적 권리)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다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a)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b)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c)자기가 창조한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유형· 무형의 이익을 보호받는 데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2. 가맹국이 이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이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중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전· 발전· 보급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제 4부

제16조

1.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함에 있어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보고를, 이 협약 제4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의무를 진다.

2.(a)모든 보고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검토를 위해 경제사회이사회 앞으로 그 사본을 보낸다.

(b)국제연합사무총장은 또한 전문기구 회원국이기도 한 가맹국으로부터 온 보고의 사본 또는 관련부분을 전문기구 앞으로 보낸다. 그러나 이것은 그 보고 또는 보고의 일부가 그 전문기구의 기본문서에 따라 임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17조

1. 가맹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가맹국 및 관계 전문기구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 이 협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보고를 단계적으로 제출한다.

2. 보고에는 이 협약의 규정된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장애를 기재할 수 있다.

3. 관련 정보가 가맹국에 의해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 앞으로 이미 제출되었을 경우, 그 정보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제출된 정보에 대한 명확한 언급만으로 족하다.

제 18조

국제연합헌장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분야의 책임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자우고 있다. 이 책임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는 이사회 앞으로 보고를 보내주는 문제에 관해 전문기구와 사전 협의를 가질 수 있다. 그 보고는 협약 준수 촉진 활동에서 이룩된 진전에 관한 것인데, 그 활동이 동 전문기구의 활동 범위에 속해 있어야 한다. 전문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이 채택한, 협약 실시에 관한 결의 및 권고의 자세한 내용이 이 보고에 포함될 수 있다.

제 19조

가맹국의 경우는 제 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구의 경우는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인권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검토와 일반적인 권고를 위해, 또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보용으로, 전기 보고를 인권위원회 앞으로 보내 줄 수 있다.

제 20조

가맹국 및 관계 전문기구는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일반적 권고에 대한 논평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보고가 그 일반적 권고를 인용하고 있을 경우, 또는 인권위원회의 보고에서 언급된 문서가 전기 권고를 인용하고 있을 경우, 그 언급에 대한 논평도 위와 똑같다.

제 2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을 지닌 권고가 첨부된 보고와, 가맹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접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 정보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취해진 조치 및 이룩된 진전에 관한 것을 말한다.

제 22조

이 협약 제 4부에 규정된 보고로부터 어떤 사안이 제기될 경우, 경제사회이사회는 기술원조 제공에 관련을 가진 국제연합의 다른 기구, 그 보조기관 및 전문기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한다. 그 사안이란, 전기 기관이 각기의 소관 분야에서 이 협약의 효과적이고도 점진적인 시행에 도움이 될 만한 국제적 조치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는 것을 말한다.

제 23조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국제적 활동 중에는 다음 방법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조약의 체결, 권고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관계국 정부와 협조하는 가운데 조직된 협의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회의와 전문가회의의 개최.

제 24조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는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 및 전문기구의 임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의 규정을, 이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25조

모든 인민은 그들의 천연 재화와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스러이 누리고 또 이용할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그 권리를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5부

제 26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가맹국이나 전문기구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국, 그리고 국제연합총회가 이 협약의 가맹국이 될 것을 요청할 그 밖의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1항에서 언급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을 통보한다.

제 27조

1. 이 협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협약은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 28조

이 협약의 조항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29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여러 가맹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을 검토·표결할 가맹국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해 주도록 요청한다. 가맹국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를 찬성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

합의 주관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 받기 위해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국제연합총회가 승인하고 또 가맹국의 3분의 2가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했을 때, 개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은, 효력 발생 시에, 개정을 수락한 가맹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그 밖의 가맹국은 이 협약의 조항 및 그 국가가 수락한 그 이전의 개정에 의해 종전대로 구속당한다.

제 30조

제 26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통보와 상관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 26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a)제 26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b)제 2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및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제 31조

1. 이 협약은 중국어 · 영어 · 프랑스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으로 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 26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협약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

전문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서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제1부

제1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자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부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

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가.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나.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다.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부

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이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미만이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 제도 및 노예제도는 금지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가.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나. 제3항 "가"호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나"호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2)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3)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 시에 요구되는 역무

(4)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이유를 통고 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 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가.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나.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 받을 것

나.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다.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라.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자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마.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 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 받도록 할 것

바.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는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출석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 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 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23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기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 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기간 중 및 혼인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제24조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 생후 즉시 등록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 25조

모든 시민은 제 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나.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다, 일반적인 평등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제 26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 27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4 부

제 28조

1. 인권이사회(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임무를 행한다.

2. 이사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의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명의 인사의 참여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3. 이사회의 위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제 29조

1. 이사회의 위원은 제 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선거를 위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2인 이하의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동일인이 재지명받을 수 있다.

제 30조

1. 최초의 선거는 이 규약의 발효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34조에 따라 선언된 결원의 보충선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구성

을 위한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전에, 이 규약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위원후보 지명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을 지명국 이름의 명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 1개월 전에 동 명단을 이 규약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이사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국제연합 본부에서 수집한 이 규약당사국회합에서 실시된다. 이 회합은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 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제 31조

1. 이사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2인 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이사회의 선거에 있어서는 위원의 공평한 지리적 안배와 상이한 문명형태 및 주요한 법률체계가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제 32조

1. 이사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 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중 9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9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후 즉시 제 30조 제4항에 언급된 회합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2. 임기 만료시의 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전기 조문들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 33조

1. 이사회의 어느 한 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 성격의 결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다른 위원 전원이 생각할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때 동 위원의 궐석을 선언한다.

2. 이사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의장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발생일로 부터 그 좌석의 궐석을 선언한다.

제 34조

1. 제 33조에 의해 궐석이 선언되고, 교체될 궐석위원의 잔여임기가 궐석선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며, 각 당사국은 궐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제 2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지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순으로 작성, 이를 이 규약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보궐선거는 이 규약 제 4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3. 제 33조에 따라 선언되는 궐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출되는 위원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궐석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제 35조

이사회의 위원들은 국제연합총회가 이사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에서 동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받는다.

제 36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정상 이사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과 편의를 제공한다.

제 37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최초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소집한다.

2. 최초회의 이후에는 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규칙이 정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이사회는 통상 국제연합본부나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합을 가진다.

제 38조

이사회의 각 위원은 취임에 앞서 이사회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 39조

1. 이사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가. 의사정족수는 위원 12로 한다.

나.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제 40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가. 관계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발효후 1년 이내

나.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사회와의 협의후 해당전문기구에 그 전문기구의 권한의 분야에 속

하는 보고서 관련 부분의 사본을 송부한다.

4.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자체의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적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조 제 4항에 따라 표명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4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 심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의 통보는 이 규약의 당사국중 자국에 대한 이사회의 그러한 권한의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가.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당사국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든가, 현재 취하고 있든가 또는 취할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나.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관련 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 당사국중 일방에 의한 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다. 이사회는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만 그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이사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에는 비공개 토의를 가진다.

마. "다"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바. 이사회는 회부 받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나"호에 언급된 관계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 "나"호에서 언급된 관계당사국은 당해문제가 이사회에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

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아. 이사회는 "나"호에 의한 통보의 접수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자. "마"호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차. "마"호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키고 관계 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의 보고서는 관계당사국에 통보한다.

2. 이 조의 제규정은 이 규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을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어떠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계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 42조

1. 가. 제 41조에 따라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규약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자.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모두 수락될 수 있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계 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는 조직위원회의 위원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인권이사회위원중에서 인권이사회 위원 3복의 2의 다수결투표로 선출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은 관계 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 41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의장을 선출하고 또한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 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동 회의는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관계 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5. 제 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이 조에서 임명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 역무를 제공한다.

6. 이사회가 접수하여 정리한 정보는 조정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관계당

사국에게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직위원회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또는 당해문제를 접수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관계당사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조정위원회가 12개월 이내에 당해문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당해문제의 심의현황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나. 조정위원회가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다. 조정위원회가 "나"호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 위원회의 보고서는 관계당사국간의 쟁점에 관계되는 모든 사실문제에 대한 자체의 조사결과 및 문제의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 및 구두 의견의 기록을 포함한다.

라. "다"호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계당사국은 동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의 수락여부를 통고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제 41조에 의한 이사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관계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모든 경비를 균등히 분담한다.

10.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9항에 의하여 관계당사국이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 43조

이사회의 위원과 제 42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명제를 향유한다.

제 44조

이 규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설립헌장 및 협약에 의하여 또는 헌장 및 협약 하에서의 인권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 규약당사국이 당사국간에 발효중인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45조

이사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한다.

제 5 부

제 46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47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6 부

제 48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 49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 50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5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

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 52조

제 48조 제 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조 제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제 48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 49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 5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제 53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 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 등본을 송부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

전문86)

본 협약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남녀평등권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세계인권선언은 차별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과 제반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출생하며 성에 기인한 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유의하고, 국제인권규약 당사국은 모든 경제·사회·문화적 및 정치·시민적 권리를 향유할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 유의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후원 하에 체결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제 국제협약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에 의해 채택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결의, 선언 및 권고에도 유의하고,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하 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정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그들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에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을 상기하고,

궁핍한 상황하에서 식량, 건강, 교육, 훈련 및 취업 기회와 기타의 필요에 있어 여성이 가장 혜택받기 어려운 점을 우려하고,

형평과 정의에 기초를 둔 신 국제질서의 수립이 남녀 평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인종격리정책,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식민주의, 식신민주의, 침략, 외국의 점령 및 지배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 등의 제거가 남성과 여성의 권리의 완전한 향유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강화, 국제긴장의 완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체제에 관계없이 국가간의

---

86) 1974. 12. 27. 유엔사무총장에게 비준서 기탁
1985. 1. 26.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발생 (협약 제9조와 16조 제1항 중 <다>, <라>, <바>, <사>호는 대한민국에 대한 적용을 유보함)
개정 1991년 3월 15일 조약 제1041호(협약 제16조 제1한중 <다>, <라>, <바>호의 유보철회)

상호 협력,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 특히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핵군축,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 평등 및 호혜의 원칙의 확인, 외국의 식민 지배와 외국의 점령 하에 있는 인민의 자결권 및 독립권의 실현 그리고 국가주권 및 영토보존에 대한 존중 등이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사이의 완전한 평등의 성취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현재까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에 대한 여성의 지대한 공헌, 모성의 사회적 중요성 및 가정과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을 명심하며, 또한 출산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아동의 양육에는 남성, 여성 및 사회 전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함을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에 명시된 제 원칙을 이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모든 형태 및 양태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시키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제2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가)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의 실체적 실현을 확보할 것

(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

(다) 남성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권한 있는 국내 법정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통하여 여성을 여하한 차별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

(라)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 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며 공공 당국과 기관이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

(마)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 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

제 3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조

1. 남성과 여성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로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는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 5조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나)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제 6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부

제 7조

당사국은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

(가)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위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기관에서의 피선권

(나) 정부 정책의 입안 및 동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며 공직에 봉직하여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

(다)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

제 8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또한 아무런 차별 없이, 국제적 수준에서 그들 정부를 대표하며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 3부

제 10조

당사국은 교육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 이러한 평등한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 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나)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다)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라)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마)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 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바)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찍이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사)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아)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제 11조

1.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모든 인간의 불가양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나)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다)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 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라)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바)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나) 종적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다) 특히 아동보육 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라) 임신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3. 본 조에 취급된 문제와 관련한 보호적 입법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정, 폐기 또는 연장되어야 한다.

제 12조

1. 당사국은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3조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다른 영역에 있어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가족급부금에 대한 권리

(나) 은행대부, 정당 및 기타 형태의 금융대부에 대한 권리

(다) 레크레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 14조

1. 당사국은 시골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와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부문에서의 노동을 포함하여 시골여성이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골여성에게 본 협약의 제 조항의 적용을 확보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 시골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시골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시골여성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가) 모든 수준에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참여하는 것

(나)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는 것

(다) 사회보장 계획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

(라)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적 문자 해독능력에 관한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식, 비공식 훈련 및 교육과, 특히 지역사회교육 및 특별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

(마) 취업 또는 자가경영을 통한 경제적 기회에 있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집단 및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바) 모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

(사) 농업신용 및 대부, 매매시설, 적절한 공업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토지 및 농지개혁과 재정착계획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아)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 공급, 운송 및 통신 등과 관련한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것

제 4 부

제 15조

1. 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동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등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동등히 취급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약과 기타 모든 종류의 사적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데 동의한다.

4. 당사국은 사람의 이전에 관한 법과 그들의 주거 및 주소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16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나)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다) 혼인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라)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마)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바)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사) 가족성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아)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2.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으며, 혼인을 위한 최저 연령을 정하고 공공 등기소에 혼인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부

제 17조

1. 본 협약의 이행상 행하여진 진전을 심의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협약의 발효시에는 18인, 그리고 35번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에는 23인의 본협약의 규율분야에서 높은 도덕적 명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구성한다. 동 전문가는 당사국에 의해 그들의 국민중에서 선출되어 개인 자격으로 봉사하여야 하며, 선출에 있어서는 공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 및 상이한 문명형태가 대표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2. 위원회의 구성원은 당사국에 의해 지명된 자의 명부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각 당사국은 그 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3. 최초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에 행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 3개월이전에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2개월 이내에 그들의 지명자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전원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그들을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작성하여 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위원회 구성원의 선거는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어 국제연합본부에서 열리는 당사국 회의에서 행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정족수를 구성하는 동 회의에서 참석 및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 다수표 및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피지명자가 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출된다.

5. 위원회의 구성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그러나 최초선거에서 선출된 구성원중 9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되며 최초선거 후 즉시 동 9인 구성원의 명단을 위원회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6. 위원회의 추가 구성원 5인의 선거는 35번째 비준 또는 가입후 본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동기회에 선출된 추가 구성원중 위원회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 2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된다.

7. 불시의 공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국의 전문가가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종료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 국민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한다.

8.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히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회가 승인하고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9.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에 따른 위원회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제 18조

1. 당사국은 그들이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택한 입법, 사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와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즉,

(가)관계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이내에 제출하며

(나)그 이후에는 최소한 매 4년마다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2. 보고서에는 본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애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 19조

1.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위원회 회의는 국제연합본부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편리한 장소에서 정규로 개최된다.

제 20조

1. 위원회는 본 협약 제 18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주를 넘기지 않는 기간동안 정규로 회합한다.

2. 위원회 회의는 국제연합본부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편리한 장소에서 정규로 개최된다.

제 21조

1. 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및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동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용으로 여성지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22조

전문가구는 본 협약 규정중 그 활동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시행에 대한 심의에 참가할 권한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가구에 그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협약의 시행에 관한 보고서랄 제출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 6부

제 23조

본 협약상 어떠한 것도 아래에 포함될 수 있는 남녀평등의 달성에 더욱 이바지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당사국의 법령, 또는

(나)동국에 대하여 발효중인 여하한 국제 협약, 조약 또는 협정

제 24조

당사국은 본 협약상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 25조

1.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국제협약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수락자로 지정된다.
3.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4.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26조

1. 본 협약의 개정 요구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의 방법으로 당사국이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총회는동 요구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

제 27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20번째의 비준서가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본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각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 28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에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이를 모든 국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2. 본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그러나 통고는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제 29조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둘 또는 그 이상 당사국간의 분쟁이 직접 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들 중 하나의 요구가 있으면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중재재판 요구 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당사국이 중재재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당사국층 일방은 국재사법재판소 규정에 부합하는 요청에 의해 동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동국이 본조 제1항에 가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타당사국 그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전항에 가속되지 아니한다.
3. 본조 제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 30조

본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히 권한이 주어진 하기 서명자는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UN 인권관련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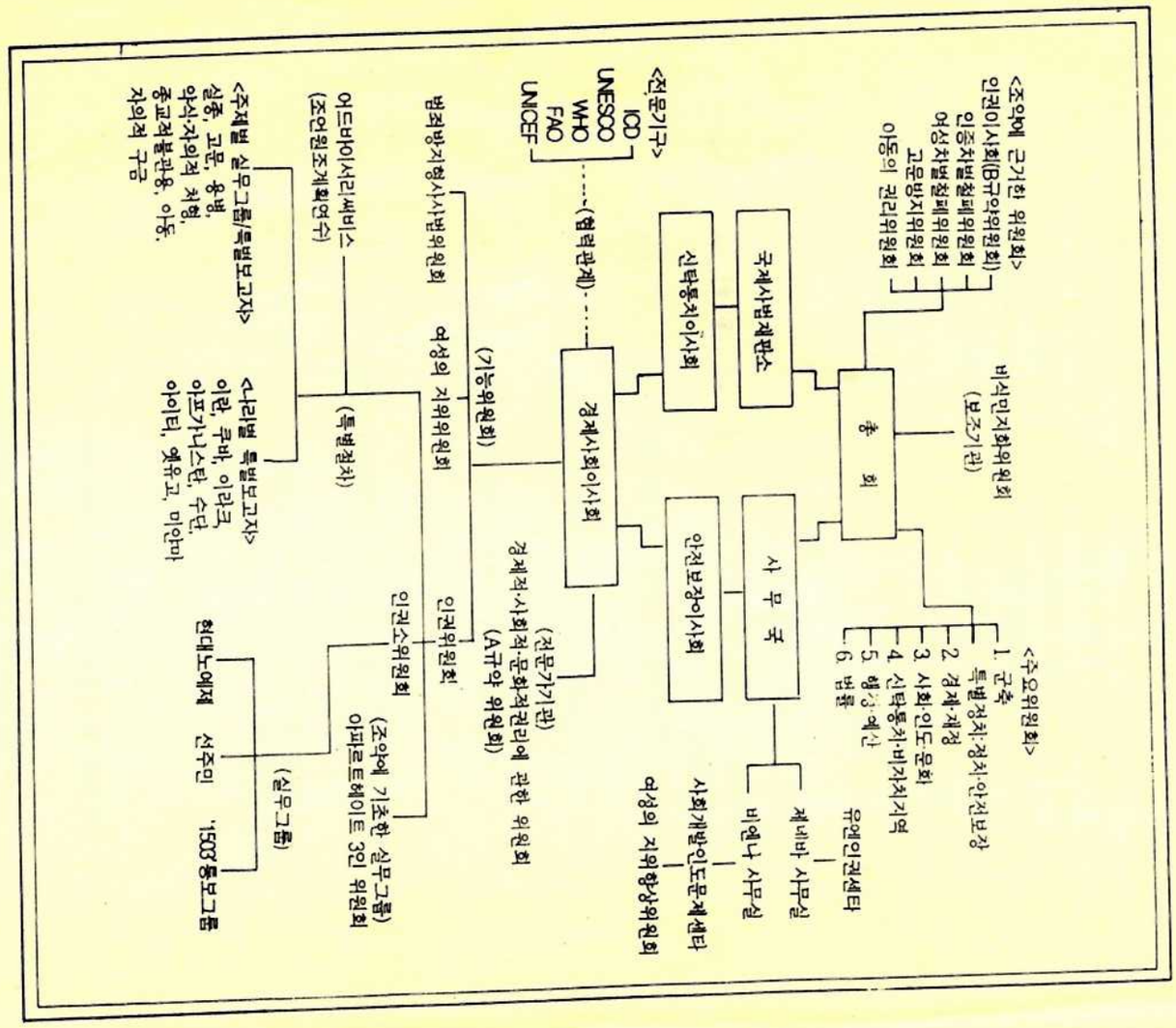

표 1 주요 인권 조약 현황

조 약 명	채택일	발효일	한국 비준일	당사국 수
1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12. 16	1976. 1. 3	1990. 4. 10	133
2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12. 16	1976. 3. 23	1990. 4. 10	132
3 Optional Protocol to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12. 16	1976. 3. 23	1990. 4. 10	87
4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1989. 12. 15	1991. 7. 11	-	29
5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1948. 12. 9	1951. 1. 12	1950. 10. 14	117
6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7. 28	1954. 4. 22	1992. 12. 3	125
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 1. 31	1967. 10. 4	1992. 12. 3	122
8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less Persons	1954. 9. 28	1960. 6. 6	1978. 8. 22	42
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 12. 21	1969. 1. 4	1978. 8. 8	150
10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1973. 11. 30	1976. 7. 18	-	89
11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12. 18	1981. 9. 3	1984. 12. 17	151
12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4. 12. 10	1987. 6. 26	1995. 1. 9	93
13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Apartheid* in Sports	1985. 12. 10	1988. 4. 3	-	58
14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1989. 11. 20	1990. 9. 2	1991. 11. 20	190
15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y	1990. 12. 18	미발효	-	6

주 당사국 수는 1995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Human Rights International Instruments Chart of Ratifications as at 31 December 1995(ST/HR/4/Rev.13)

표 2 인권 조약별 위원회 개관

명 칭	설립 근거 조항	구성 인원	보고 주기
1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 사회 이사회 결의 1985/17	18명	최초 보고서 2년 이후 매 5년
2 Human Rights Committee	국제 인권 규약 B규약 제28조	18명	최초 보고서 1년 이후 매 5년
3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인종 차별 철폐 조약 제8조	18명	최초 보고서 1년, 이후 매 2년
4 Group of Three on Apartheid	아파타이드 범죄 억제 및 처벌 조약 제9조	3명	최초 보고서 2년 이후 매 4년
5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 차별 철폐 조약 제17조	23명	최초 보고서 1년, 이후 매 4년
6 Committee against Torture	고문 방지 조약 제17조	10명	최초 보고서 1년, 이후 매 4년
7 commission against Apartheid in Sports	스포츠에서의 반아파타이드 조약 제11조	15명	최초 보고서 1년, 이후 매 5년
8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 권리 조약 제43조	10명	최초 보고서 2년, 이후 매5년
9 Committee on the Proe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 조약 제72조	10명 (추후 14명)	최초 보고서 1년, 이후 매5년

엮은이 인권운동사랑방(인권정보자료실)
발행일 1997년 3월 5일
주 소 (우 140-150)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 화 02-715-9185
팩 스 02-715-9186
E-mai: rights@interpia.net
http://www.interpia.net/~rights